

제307회 임실군의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21. 3. 15.

임실군의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별도로 고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있는 관리동, 샤워장, 오토캠핑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국민여가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임실군수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을 캠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운영자”란 캠핑시설을 수탁 운영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의 운영사항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을 이용하여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등)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캠핑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캠핑장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자체 운영 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해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운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제19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캠핑장 운영 시 돌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캠핑장 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기준 (1동당)	비 수 기	성 수 기	비 고
캐빈하우스	1박 2일 사용 시	150,000	200,000	8인용 기 준
캐빈하우스	1박 2일 사용 시	100,000	150,000	4인용 기 준
카 라 반	1박 2일 사용 시	70,000	120,000	
카라반(개인)	1박 2일 사용 시	30,000	40,000	
오토캠핑	1박 2일 사용 시	30,000	40,000	

※ 성수기: 7월 ~ 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2시간 미만 10,000원, 2시간 초과~4시간 미만 20,000원,
4시간 초과 1일 시설사용료 징수)

※ 수요 및 운영상황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최대 20%까지 할인 가능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반 환 기 준		비 고	
국민여가 캠핑장	예약 선납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품목별 해결기준 중 숙박업 성수기는 다음을 말한다. - 주중: 7월~8월 -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80% 공제후 환급		
	예약 선납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선납금액 90% 공제후 환급		
	예약 선납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선납금액 20%공제후 환급		
	예약 선납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선납금액 30% 공제후 환급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별표 3]

사용자 수칙(제11조제2항 관련)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의 편안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선불입니다.

3.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 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음식쓰레기는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전기시설

- 전력 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사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프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캠프장 내에서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캠핑장 시설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한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